

고성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849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11. 08.

이정숙 의원 등 3인

나. 회 부 일 자 : 2024. 11. 14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4. 11. 27.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설명자: 이정숙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이 조례는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고성군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, 제2조)
- 2) 군수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3) 경사로 설치 지원을 규정함(안 제4조)
- 4) 경사로 종류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5)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
- 6) 설치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7) 신청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- 8) 협력체계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
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
및 같은 법 시행령 등
- 2)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4-48호
 - 예고기간: 2024. 11. 8. ~ 2024. 11. 13.(5일간)
 - 의견반영 등 조치 내용: 의견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장혜정)

-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-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 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 -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, 용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의하였음.
 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 - 경사로 설치지원에 대한 시책 추진과 예산 확보를 군수의 책무로 규정하였음.
 - 경사로 설치 지원(안 제4조)
 - 경사로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시설주에게 경사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.
 - 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(안 제5조)
 - 경사로의 종류와 장애인 등의 안전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하였음.
 - 지원신청 및 결정, 정산 등(안 제6조~제7조)
 - 지원신청서의 검토사항과 경사로 설치비용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 - 신청인의 의무(안 제8조)
 -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신청인의 의무를 규정하였음.
 - 협력체계 구축·운영(안 제9조)
 -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-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,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으로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모든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생활환경을 만들어가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4. 11. 27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